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25

발의연월일: 2024. 8. 23.

발 의 자:김원이·조인철·이기헌

박희승 • 신정훈 • 남인순

김남근 · 김선민 · 서미화

박민규 · 장종태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·가공·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,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.

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·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,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

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호,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호 중 "김의"를 "김 종자의 배양·생산과 김의"로 한다. 제4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의2.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| 제2조(정의) | | |
|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| | |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 | |
| 2. "김산업"이란 <u>김의</u> 생산·양 | 2 <u>김 종자의</u> | | |
| 식·가공(단순 건조를 포함한 | <u>배양·생산과 김의</u> | | |
| 다. 이하 같다) • 제조 • 조리 | | | |
| ・포장・보관・수송・유통・ | | | |
| 수출・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 | | | |
|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 | | | |
| 업을 말한다. | | | |
| 3. ~ 5. (생 략) | 3. ~ 5. (현행과 같음) | | |
|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 |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 | | |
| 략) | 과 같음) | | |
|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| ② | | |
|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| | | |
| 1. ~ 7. (생 략) | 1. ~ 7. (현행과 같음) | | |
| <u><신 설></u> | 7의2.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| | |
| | 지원에 관한 사항 | | |
| 8. (생 략) | 8. (현행과 같음) | | |
| ③ ~ ⑤ (생 략)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| | |